

도민이 중심
신뢰받는 의회

2024. 10. 11. (금)

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4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
3. 제안이유

- 개에 의한 상해 및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개정된 「동물보호법」이 전면시행됨('24.4.27)
-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'기질평가제'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지식과 시설을 보유한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(위험성)평가 운영
- 위탁기간 : '25. 1. 1. ~ '27. 12. 31. (3년)
- 수탁기관 : 도내 기질평가 가능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
-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의위원회 심의·선정

○ 위탁금액 : 38,500천원(도비 100%)

- 산출근거 : 1년 110두 (도내 연평균 개물림사고 97건+맹견 신규 등록 9건)
- 산 출 식 : 3,500천원/회 × 11회(1회 10두씩 평가) = 38,500천원

○ 위탁내용

- 맹견사육허가 등에 따른 기질평가(동물보호법 제18조)
-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에 따른 기질평가(동물보호법 제20조)
- 맹견이 아닌 사고 분쟁견의 기질평가(동물보호법 제24조)
- 기질평가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와 사람의 안전사고 예방
- 기질평가 수행 가능한 전문인력 교육 및 운영
- 기질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활용
- 공정한 기질평가 수행을 위한 영상촬영 및 기록
- 그 밖에 관계법령·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반려견 기질평가 및 동물복지 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견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개물림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「동물보호법」의 개정으로 개의 공격성을 평가하기 위한 ‘기질평가제’가 신규 도입되었고
- 이를 동물행동 전문기관(관련 대학 또는 훈련소 등)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신규제도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제3항에 따르면,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,
- 반려견 기질(위험성)평가 운영은 「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0조(사무의 위탁)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

□ 지방자치법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~ 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10조(사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, 평가보조인력,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- 또한, 반려견 기질 평가 사무는 맹견에 대한 지식·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및 관련지침에 따라 적합한 규격을 갖춘 시설과 기질평가시 관련자와 보조견의 안전을 위해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맹견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 장비와 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함

- 이에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제3호에 따른 ‘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’에 해당되는 바 사무의 민간 위탁이 가능함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**
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라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⁸⁾에 따라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한 충북도의회 동의의를 구하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것임
-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은 현행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, 사무의 내용이 전문인력 및 전문시설을 필요로 하는 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성과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됨
- 다만,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

8)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」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"도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